

2012. 2. .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장

담당변호사 김 병 재



담당변호사 송 평 근



담당변호사 이 완 식



담당변호사 김 선 태



담당변호사 김 진 영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귀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11구합33679 대학교통폐합승인처분취소
 원 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외 4명
 피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가천학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가. 학교법인 경원학원은 경원대학교를 설치 운영 중이었고, 학교법인 가천학원은 가천의과학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는데, 두 학교법인은 2009. 12. 8. 피고의 설립허가를 받아 합병(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되었습니다(을제2호증 중 제1쪽). 그리고 2011. 9.경 학교법인 명칭을 현재의 '학교법인 가천학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참가인은 종전에 각 설치하여 운영되었던 경원대학교, 가천의과학대학교를

통합함으로써, 구조개혁을 통한 혁신적인 도약의 계기, 대학특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대학재정 및 경영의 합리화 기반 정립,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중추적 역할 담당,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급 인적자원 공급원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43, 44쪽).

이에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대학교는 2010. 12. 14. 통합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을나 제2호증 중 제98, 99쪽), 이후 통합추진위원회 및 통합실무추진단을 설치하여 대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을나 제1호증), 사립대학교 통폐합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6호; 을나 제3호증)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가천의과학대학교에서는 통폐합을 위한 실무작업을 거쳐 2011. 4. 11.경 통폐합 내용에 대한 교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1. 4. 12.경 교무운영위원회에서 통합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총 인원 26명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 을나 제2호증 중 제92, 98쪽). 그리고 2011. 4. 13.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동문회 및 학생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을나 제2호증 중 제89, 91, 98쪽), 2011. 4. 19.경 대학평의원회의 통합안 심의·확정을 받았습니다(총 인원 11명 전원 출석 및 전원 찬성; 을나 제2호증 중 제93, 98쪽).

한편 경원대학교 역시 통폐합을 위한 실무작업을 거쳐 2011. 4. 8.경 교직원, 동문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을나 제2호증 중 제87, 88, 91,

99쪽), 2011. 4. 11.경부터 2011. 4. 17.경까지 재학생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89, 90, 99쪽). 그리고 경원대학교에서는 2011. 4. 18.경 교무위원회의 통합안 심의·확정(총 인원 33명 중 32명 출석 및 출석인원 전원 찬성; 을나 제2호증 중 제92 99쪽), 대학평의원회의 통합안 심의·확정이 이루어졌습니다(총 인원 11명 중 10명 출석 및 출석인원 전원 찬성; 을나 제2호증 중 제93, 99쪽).

다. 이에 따라 참가인 이사장, 각 대학교 총장은 2011. 4. 20. 대학교 통폐합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을나 제2호증 중 제86쪽, 을나 제4호증 중 안전설명자료 참조), 참가인은 2011. 4.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보낸 사립대학교 통폐합신청 안내(을나 제5호증)에 따른 '가천의과학대학교-경원대학교 통합신청서'를 토대로 대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하였습니다(이사 13명 중 12명 출석, 감사 3명 전원 출석, 출석 이사 전원 찬성; 을나 제4호증).

그러고 나서 참가인은 2011.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통폐합승인 신청을 하였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제1차 심의(2011. 5. 19.), 제1차 심의결과를 반영한 참가인의 수정본 제출(2011. 5. 30.),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현지실사(2011. 5. 31.), 현지실사 결과를 반영한 신청서 수정본 제출(2011. 6. 9.),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의(2011. 6. 23.)를 거쳐 통폐합승인신청 내용이 기준을 충족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을 제2호증).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1.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을 하면서, "통

폐합일(2012. 3. 1.) 이전까지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학칙개정 및 정관변경 등 통폐합 대학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를 수료한 자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원간의 친목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원고 조규호, 김미라는 경원대학교를 수료한 자, 원고 박찬웅, 고낙준은 현재 경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입니다.

원고들은 교명변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2011. 7. 11.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을 하였는데, 이 중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변경한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참가인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대학교 교직원, 재학생, 동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3.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거나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 법률상 이익의 부존재

원고들은 교명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고, 단지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원고들은 통폐합 전 경원대학교의 총동문회, 졸업생, 재학생인 자들로서,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의미, 중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경원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동문들 중에는 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후술하는 바와 같이 학교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가천

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데 찬성하였습니다), 교명변경에 대한 불만은 어디까지나 심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소재기를 정당하게 할 만한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에 교명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명변경이 위법하다는 사유는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 원고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나 제1호증) 제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대학교 통폐합 심의기준 등에는 교명변경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내용에는 교명변경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명변경을 포함한 위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합니다(원고들은 교명변경 부분 외에 대학교 통폐합 자체에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먼저 대학의 통폐합에 대한 근거 규정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입니다.

위 규정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서, 위 규정 제2조의3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2.26]

1.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그리고 위 규정 별표1의3은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명변경에 관한 근거 규정은 위 대학 통폐합에 관한 근거규정과 다릅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⑤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는 『2.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16조는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의 명칭변경은 반드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결국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의 통폐합과 학교의 명칭변경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고, 그 근거규정도 다릅니다.

(2) 다만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은 어느 한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통합을 하여 하나의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두 대학교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종전 대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폐합신청을 하기 전에 통폐합에 대한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경될 교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으며, 이후 참가인의 이사회 최종 의결을 거쳐 통폐합 후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미리 지정(예정)한 것입니다(학교 명칭은 추후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2012년 2월말 이전까지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정관변경 인가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갑 제1호증 중 제2쪽 2. 라항).

결국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내용은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를 통폐합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것에 있고, 이 사건 통폐합승인서에 통폐합된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기재한 것은 통폐합된 대학교의 명칭을 참가인이 요청한 바에 따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에 따라 교명변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명변경을 문제 삼아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입니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또한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내지 내용(범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다른 사유를 취소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교명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대학교 통폐합에 대한 승인처분시 검토기준에는 학교 명칭에 대한 부분이 없으므로 교명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고, 또한 교명변경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교직원, 재학생, 동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학교 통폐합에 대한 피고 처분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 해석을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참가인은 (임시) 교명변경에 대하여 교직원, 재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들은 대학교 통폐합 자체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교명변경 부분에 대하여만 문제삼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교명변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은 교명변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 대학설립·운영규정(을나 제1호증)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설립기준,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요구되는 시설,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 제1조).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설립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설립인가기준을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언급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각 호에서는 교원확보율, 통폐합 후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하고

있고, 위 단서에 따라 마련된 피고의 사립대학교 통폐합기준 고시(을나 제 3호증)에서는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 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폐지되는 대학의 학사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특성화 계획수립, 통폐합신청의 제한사유, 통폐합의 심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별표1의3(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따르면, 대학과 대학간 통폐합시 입학정원 감축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의 감축'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대학간 통폐합시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각 호, 사립대학교 통폐합기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처럼 대학간 통폐합시 입학정원 감축기준, 교원확보율 기준, 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통폐합으로 인하여 대학 재정이 악화되거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대학교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대학간 통폐합시 행정청의 심의를 받아 인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명변경은 통폐합된 대학 재정이나 교육 여건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므로, 대학교 통폐합시 교명변경은 필수적인 심의 내지 인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1항 단서는 대학간 통폐합시 학정원 감축기준, 교원확보율 기준, 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등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교명변경은 이러한 통폐합의 필수적인 인가대상이 아니므로, 통폐합승인처분이 있다 하여 교명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다만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은 어느 한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대학교가 대등한 지위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어서, 두 대학교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종전 대학교의 명칭을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통폐합신청을 하기 전에 통폐합에 대한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경될 교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으며, 참가인의 이사회 최종의결을 거쳐 통폐합 후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임시 지정(향후 정관변경을 거쳐 정식으로 교명을 '가천대학교'로 변경하기로 예정)한 것입니다(을나 제4호증). 따라서 참가인은 추후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교명변경을 새로이 추진할 예정입니다(이 사건 통폐합승인서에서도 '2012년 2월말 이전까지 참가인 정관변경 인가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삼았습니다).

(4) 결국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에는 교명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내용에 대하여 그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 교명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교명변경은 피고의 인가사항이고(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조 제2, 5항), 교명은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고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정관변경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사립학교법 제16조), 결국 학교법인이 기설치된 대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 피고의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록 참가인은 통폐합 전 대학교의 명칭을 통폐합 후 대학교의 명칭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을 받음에 있어 임시로 통폐합 후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명을 임시로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정식으로 교명변경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 외에 교직원, 학생, 동문 등의 의사를 반영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가인은 대학교 통폐합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학교법인 및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까지 받았습니다.

① 교수진 : 참가인은 각 대학교별로 2011. 2.경 학사편제실무위원회, 교원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각 대학교 교수들에 대하여 대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성 및 통폐합 후 대학교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가천의과학대학교의 경우 총 308명의 교수 중 290명이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경원대학교의 경우 총 429명의 교수 중 370명이 위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 87, 98, 99쪽).

② 직원 : 참가인은 2011. 2.경 대학교 통폐합에 따른 직제개편 및 직원인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각 대학교별로 행정조직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은 직원들로부터 ①항 동의서를 받았는데, 가천의과학대학교의 경우 총 169명의 직원 전원이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경원대학교의 경우 총 181명의 직원 중 180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88, 98, 99쪽).

③ 재학생 : 참가인은 각 대학교별로 총학생회 임원 등을 상대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먼저 가천의과학대학교에서는 2011. 4. 13.경부터 4. 27.경까지 총학생회장 및 각 학과 학회장 30여명 등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총학생회장은 ①항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89쪽). 다음으로 경원대학교에서는 2011. 4. 11.경부터 4. 17.경까지 7차례에 걸쳐 총학생회 임원, 학생자치기구 간부, 일반 학생 등을 상대로 대학교 통폐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통폐합 및 교명변경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총학생회장 및 간부 16명 중 14명으로부터 ①항 동의서

를 교부받았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90쪽). 특히 경원대학교의 경우 위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교측이 교명변경안(경원대학교, 경원가천대학교, 가천 경원대학교, 가천대학교 중 택1)에 대하여 2011. 4. 18. 교무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형식으로 잠정적으로 정할 것임을 밝혔는데, 학생대표단은 위 교무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생의견발표, 투표과정 참관을 요청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90쪽). 이에 4. 18.자 경원대학교 교무위원회에서는 총학생회장 외 3인이 학생대표로 참관하여 소견발표를 하였고, 투표 및 개표과정, 투표결과에 대하여 참관을 하였으며, 위 투표결과(총투표참가자 32명 중 26명이 '가천대학교'에 투표를 하였고, 나머지 6명은 그 외의 다른 교명에 투표하였습니다)에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퇴장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92쪽).

④ 동문 : 가천의과학대학교에서는 2011. 4.경 총동문회를 상대로 통폐합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총동문회 임원 9명 전원이 ①항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원대학교의 경우 2011. 2. 18. 총동문회장 및 일부임원이 총장을 면담하여 대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2011. 3. 11. 학교 대외협력처장 외 2인, 총동문회 사무총장 외 3명이 대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으며, 2011. 4. 8. 총동문회장 외 동문 40명을 상대로 통폐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에서는 임원 26명 중 11명이 ①항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을나 제2호증 중 제91쪽).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참가인은 통폐합 전 각 대학교별로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에게 대학교 통폐합의 경위,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통폐합된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교명변경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통폐합에 따른 이견을 좁히고 대학교 통폐합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가인은 2011. 4.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학교 통폐합안에 대한 논의하였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총 이사 13명 중 12명의 이사 참석, 감사 3명 전원 참석; 을나 제4호증).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 내용에는 교명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승인처분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의3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참가인이 통폐합될 대학교의 명칭을 임시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과정에서 각 대학교의 교직원, 학생, 동문들을 상대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여 '가천대학교'로 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과정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내용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의 하자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전혀 이유 없는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나 제1호증 |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23297호) |
| 1. 을나 제2호증 | 통폐합 승인신청서(최종본) |
| 1. 을나 제3호증 | 사립대학통폐합기준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6호) |
| 1. 을나 제4호증 | 이사회 회의록 |
| 1. 을나 제5호증 | 사립대학교 통폐합 신청안내(교육과학기술부) |

2011. 12.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장

담당변호사 김 병 재



담당변호사 송 평 근



담당변호사 이 완 식



담당변호사 김 선 태



담당변호사 김 진 영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귀중

「대학설립 운영 규정」

[시행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 02 - 2100 - 6921~24, 02 - 2100 - 6926~28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교원 및 수익용기본 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③ 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⑦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들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편적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9.4.21>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 ⑨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4.21>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학·연·산(學·研·産), 학·연(學·研) 또는 학·산(學·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9.4.21>

1.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12.6]

[중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07.12.6>]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2.26>

1. 교원은 별표 1의4에 따른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의 확보율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의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가 완성된 대학은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계약학과등에 등록한 학생은 제외한다)로 하고,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12.3, 2009.4.21>

④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과등을 신설·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 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대학원대학과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사과정의 입학정원과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2.16>

[본조신설 2007.12.6]

[중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제2조의4(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업대학은 25퍼센트 이상, 전문대학은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각각 감축하는 경우 교원 및 교사등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6, 2010.2.26>

1. 통·폐합 후 교사등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합과 같거나 증가할 것
2. 통·폐합 후 교사등의 확보율이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의 확보율보다 증가할 것
3. 교원은 별표 1의4에 의한 연차별 교원확보율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 2005.10.25]

[제2조의2에서 이동 <2007.12.6>]

제2조의5(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명으로 본다.

1. 학생 정원의 2배의 학생수를 25로 나눈 수의 교원. 이 경우 교원의 확보는 제2조제1항제2호를 따르도록 하되, 교원의 3분의 1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겸임교원과 등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교사. 이 경우 주간 및 야간 등 2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사의 면적은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과정의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원을 그 대학의 관련되는 학과 또는 학부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이 담당하는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은 그 전문대학원에 개설된 전체 교과목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

③대학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설치계획서를 당해연도 6월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주체는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대학원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외에 추가로 1년분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⑤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주체는 임차한 시설에 대하여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의 등기를 완료한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한 설립주체는 그 교육시설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9.4.21 >

[본조신설 2006.6.7]

[제2조의3에서 이동 <2007.12.6 >]

제2조의6(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

[본조신설 2008.9.23]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4조제6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교사: 별표 3에 따른 계열별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변경하려는 위치에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

2. 교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

[본조신설 2011.2.16]

제3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 ①내학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 및 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9.4.21>
-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 ⑧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4.21>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6>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나.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 다.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